

제 호

인권교육기관 지정서

- 교육기관명:
- 소재지:
- 법인명: (법인등록번호:)
- 교육기관의 장 성명: (생년월일:)

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3항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인권교육기관으로
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 직인